

## 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제재 처분 재심의 계획 공고
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벤처투자법’) 시행(2020.8.12.) 이후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재심을 실시하고자 하오니, 희망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11월 8일  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### 1. 목적

-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처분 부과를 위해 벤처투자법령 제재양정 기준을 마련했으며, 제재양정기준에 근거한 재심의 실시

### 2. 신청 주체 및 대상 처분

#### < 신청 주체 >

- ‘20.8.12.(벤처투자법 시행)부터 재심의 공고 전일까지 벤처투자법령\* 위반에 따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로부터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재심을 원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\*\*

\*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(舊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또는 舊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)

\*\* 창업기획자,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,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, 외국투자회사

- 공고일 기준 벤처투자법령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이 취소·말소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는 제외
-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 등록·운용과 무관하게 창업기획자 등록·운영, 고유계정 운영 등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
- 개인투자조합의 등록·운용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

### < 대상 처분 >

-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대상
  -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'주의' 또는 '주의촉구'는 제외
- 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 한해 재심의 신청 가능
  - 처분 확정 전 '사전처분통지'는 제외
    - \* 사전처분통지를 받은 경우는 처분을 확정하기 전 해당 사전처분통지에 관한 당사자 의견제출 기회를 통해 소명 가능
- 1차 행정처분(시정명령)을 이행하지 않아 동일 건에 대한 후속 행정처분은 대상이 아님

## 3. 신청접수

- 공고 기간
  - '23.11.8(수) ~ 23.11.24(금)

□ 신청·접수 기간

○ '23.11.13(월) ~ 23.11.24(금), 18시까지

\* 온라인은 11.24(금) 18시까지 접수된 건, 우편물은 11.24(금)까지 우체국 소인 날인분에 한하여 인정함

□ 신청·접수 방법 : 온라인 또는 우편

○ 온라인(e-mail) : grryu@korea.kr

○ 우편 : 세종특별시 가림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'벤처투자 행정처분 재심의 담당자 (우 : 30121)

○ 문의처 :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(044-204-7723, 7725)

□ 신청서류

○ <별첨1> 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처분 재심의 신청서(이하 '신청서')

○ 신청서의 소명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자유서식)

#### 4. 재심의 절차 및 기준

□ 절차



\* 대면으로 재심의 사유 소명을 희망하는 운용사의 경우 위원회에 참석 가능

□ 기준

- <별첨2>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'제재양정기준'에 따른 감경·면제 사유를 기반으로 법 위반동기, 파급효과, 위반 행위 시정 노력 등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 고려

5. 유의사항

-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희망하는 경우는 <별첨1> 신청서 상의 위원회 참석 여부를 묻는 항목에 '참석희망'에 체크하여 회신할 것
  - '참석희망'에 체크하지 않는 경우 불참 의사로 간주하며, 위원회 개최 날짜는 참석을 희망한 경우에만 별도 안내 예정
- \* 제재심의위원회는 '23.12월 중 개최 예정이나 변경될 수 있음
- 동일한 운용사에서 2건 이상의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<별첨1> 신청서는 각각 1부씩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각각 제출할 것
- <별첨2> 제재양정기준을 참고하여 <별첨1> 신청서에 재심을 통해 감경 및 불처분을 희망하는 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
- 재심의 신청을 위한 소명 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재심의에 불리할 수 있음
- 재심의 결과 통보 이후 기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의 내용이 거짓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, 재심의 결과는 취소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허위 자료 제출에 따라 행정제재 처분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위원회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